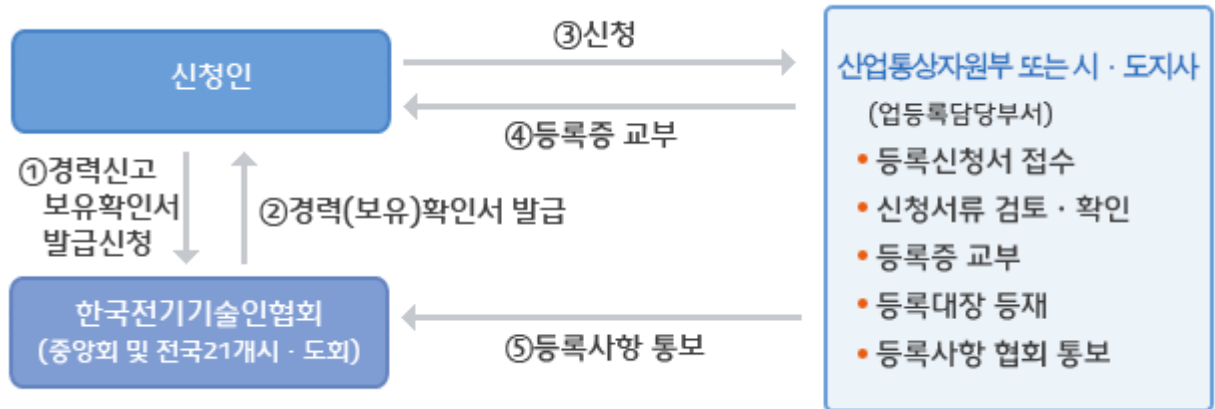


전기안전관리 대행업·전문대행기관 신규등록

법적근거 : 전기사업법 제 73 조의 5 제 1 항·제 2 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 46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4 항 및 제 46 조의 3 제 1 항

처리절차



- ① 신청인은 보유기술인력의 경력확인신청서류를 협회에 제출
 - ② 협회는 경력확인신청서류를 검토·확인한 후, 전력기술인경력(보유)확인서(시·도/산업통상자원부 제출용)을 발급
 - ③ 신청인은 별지 제 43 호서식 “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,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,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”를 아래 신청기관에 제출
 -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
 -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: 해당 시·도지사
 - ※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례로 대행업 등록업무를 시·군·구에 위임된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서류 제출시 해당지자체에 확인 필요
 - ④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·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류가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협회 및 자치구에 통보
 - 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록사항을 협회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
- 신청시기: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

처리기한 : 10 일

신청서류

가.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출서류

1) 기술인력별 경력확인신청서류(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)

① 별지 제 4 호서식의 경력신고서(증명사진 2 매 포함)

② 별지 제 6 호서식의 경력확인서(사용자 확인 날인 받은 것)

③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증빙자료(국민연금·의료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가입확인서 중 1 종)

④ 국가기술자격증 사본

⑤ 주민등록초본(군경력 및 복무기간 확인용)

2) 전력기술인 경력(보유)확인서 발급신청서류

① 별지 제 8 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(보유)확인서 발급신청서

② 기술인력별 재직증명서

③ 기술인력별 재직사실증빙자료 (국민연금·국민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가입확인서중 1 종)

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)

나.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·도지사 제출서류

1) 산업통상자원부 :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(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45 조제 1 항제 1 호 관련 별표 1 의 2 등록요건 충족조건)

① 별지 제 43 호서식의 등록신청서 ②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법인인 경우 : 납입자본금

- 개인인 경우 : 자산평가액 또는 금융기관 잔고증명서

③ 전력기술인 경력(보유)확인서(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)

④ 장비명세서와 그 증빙자료(구입영수증, 실물 사진대장)

⑤ 신청인 확인서류(별지 제 43 호서식 하단에 “동의서”에 서명 제출시 확인서류 제출면제)
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)

- 사업자등록증 사본

2) 시·도지사 :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또는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(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45 조제 2 항제 1 호, 제 3 항 관련 별표 2, 별표 3 등록요건 충족조건)

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

- 별지 제 43 호서식의 등록신청서

-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* 법인인 경우 : 납입자본금, 기업진단보고서

* 개인인 경우 : 자산평가액 또는 금융기관 잔고증명서

- 전력기술인 경력(보유)확인서(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)

- 장비명세서와 그 증빙자료(구입영수증, 실물 사진대장)

- 신청인 확인서류(별지 제 43 호서식 하단에 “동의서”에 서명 제출시 확인서류 제출면제)

* 법인인 경우 :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
* 개인인 경우 : 사업자등록증 사본

② 개인대행자

- 별지 제 43 호서식의 등록신청서

-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(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)

- 장비명세서와 그 증빙자료(구입영수증, 실물 사진대장)

- 신청인 확인서류(별지 제 43 호서식 하단에 “동의서”에 서명 제출시 확인서류 제출면제)

* 사업자등록증 사본

참고사항

○ 제출서류중 각종 확인서 유효기간 및 중복서류

- 위 제출서류중 확인서류(보유확인서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는 신청서 제출일전 30 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

- 중복된 서류는 1 부만 제출함

○ 신규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여“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재직사실확인서류(4 대보험가입확인서류)”제출하지 못하는 경우

- 기술인력보유확인서를 먼저 발급하여 신청인이 업등록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후, 미 제출서류는 업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음(시·도지사도 자체판단에 따라 동 처리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)

행정사항

가. 한국전기기술인협회

1) 업등록이전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(시·도제출용)

① 신청인이 제출한 기술인력별 경력확인서류 및 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류가 전력기술인 경력확인 및 시행령 별표 1 의 2, 별표 2, 별표 3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·확인

○ 업종별 보유인력 등록기준 적정여부

○ 기술인력 자격조건 적정여부

- 안전관리자 : 전기분야 기술사, 전기기능장+실무경력 2 년이상, 전기기사+실무경력 2 년이상, 전기산업기사+실무경력 4 년이상

- 안전관리보조원 : 전기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실무경력 5 년이상인 자

○ 보유기술인력 재직사실여부

-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증빙자료로 해당업체 소속여부 확인

○ 국가기술자격 취소·정지 처분 받은 자 포함여부

○ 보유기술인력 타 업체(대표자 및 기술인력) 및 다른 법률(전력기술관리법, 전기공사업법 등)법에 의한 등록(선임) 여부(이중취업, 겸직금지)

②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·확인한 결과, 해당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(보유)확인서를 발급

- 전력기술인 경력(보유)확인서(시·도지사/산업통상자원부 제출용)

2)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업 등록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협회 전산 등재하여 관리

나.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·도지사

①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가 시행령 별표 1 의 2, 별표 2, 별표 3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·확인

○ 신청인 확인 등 :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

- 상호, 대표자(임원포함), 소재지 등 등록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

- 사업목적(업종 형태)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

○ 업종별 보유인력 등록기준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

- 보유인력 등록기준 적정여부

- 보유인력의 해당 자격(수첩)소지 여부

- 보유기술인력중 국가기술자격 취소·정지 처분 받은 자 포함여부

-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

* 법 제 73 조의 6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(등록취소 사유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)는 취소된 후 2 년이상 경과할 것

○ 보유기술인력 타 업체(대표자 및 기술인력) 및 다른 법률(전력기술관리법, 전기공사업법 등)에 의한 등록(선임) 여부(이중취업, 겸직금지)

②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·확인결과 적합한 경우, 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

전기안전관리 대행업·전문대행기관 업무범위 등 요약문

법적근거 : 전기사업법 제 73 조제 2 항, 제 3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1 조, 제 44 조의 2

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

구분	등록·신고처	등록기준	영업(대행) 범위 등
전문 대행기관	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팀	①자본금 : 2 억이상 ②기술인력 - 전기기사 또는 기능장 5 명 - 전기산업기사 10 명 - 보조원 5 명 ③ 장비 : 공용 및 개인장비 (등록기준 참조)	①영업지역 : 제한 없음 ②업무범위(전기설비규모) - 전기설비용량 제한없음 ③근무형태 : 상주근무
대행사업자	각 시·도지사 업무담당부서	1. 특별시,광역시 ①자본금 : 5 천만원 이상 ②기술인력 - 전기기사 또는 기능장 2 명 - 전기산업기사 5 명 - 보조원 1 명 ③장비 : 공용 및 개인장비 (등록기준 참조) 2. 도,특별자치도 ①자본금 : 3 천만원 이상 ②기술인력 - 전기기사 또는 기능장 2 명 - 전기산업기사 3 명 - 보조원 1 명 ③장비 : 공용 및 개인장비 (등록기준 참조)	①자본금 : 기준 없음 ①영업지역 : 업 등록(신고) 시·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②업무범위 가. 대행범위(전기설비규모) - 수용설비 1000 kW미만 - 비상발전설비 500 kW미만 - 상용발전설비 300 kW미만 - 태양광발전설비 1000 kW미만 ※위 각각의 조건 및 총 용량 합계 2500 kW미만 충족 조건 나. 업체·기관별 대행가중치 - 소속 기술인력수에 60 점을 곱한 점수 이하 범위 다. 개인별 대행가중치 - 1 인당 가중치 78 점이하 ③근무형태 : 비상주 (용량별 월 1~6 회 방문점검)
개인대행자	각 시·도지사 업무담당부서 (지자체에 따라 시·군구 위임)	①자본금 : 기준 없음 ②기술인력 -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산업기사 1 명 ③개인장비 : 있음 (등록기준 참조)	①영업지역 : 업 등록(신고) 시·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②업무범위(전기설비규모) 가. 대행범위(전기설비규모) - 수용설비 500 kW미만 - 비상발전설비 300 kW미만 - 상용발전설비 150 kW미만

			- 태양광발전설비 250 kW미만 ※위 각각의 조건 및 총 용량 합계 1050 kW미만 충족 조건 나. 개인별 대행가중치 - 1 인당 가중치 60 점이하 ③ 근무형태 : 비상주 (용량별 월 1~6 회 방문점검)
--	--	--	--